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분위장수사 허가 절차 간소화 〉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579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신분위장수사 허가 절차 간소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4. 9. 3.
3. 회 부 일 : 2024.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함.

한편, 2021년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되었는데,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Ⅲ. 검토의견

1. 신분위장수사 허가 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던 절차를 법원에 직접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항·제8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② (생략)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u>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u>	③ ----- ----- <u>법원에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다.</u>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 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u>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u>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 ----- ----- ----- ----- ----- <u>법원에 신청한다.</u> -----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으로, 2021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 중임.

입법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발의된 의원안¹⁾은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에 의한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법한 위장수사 개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유형을 나누고, 신분비공개수사와 구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규정하며, 수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뒤 사후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통제절차를 마련함.

1)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3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357호),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677호), 양금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5009호)]이 발의되었음.

한편, 법원 허가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여성가족위원회는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의결하였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간 이견²⁾이 존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청구한다’로 문구가 변경됨(제25조의3제3항·제8항).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근거 및 절차 규정 >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

2) 법무부는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현행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청은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는 영장과 성질을 달리하고 법원으로부터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책임 있는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에 의무규정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의안번호 제2108400호), 7~9쪽 참고]

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4(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은 신분위장수사의 엄격한 통제 절차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아 경찰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절차를 삭제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

신분위장수사는 「헌법」 제12조제3항³⁾에 따른 영장주의가 직접 적용되는 영역으로 보기 어렵고 현재 조항도 검사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일반적인 영장 청구 절차와 달리 “청구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등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는 영장 청구와 성질이 다르고,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⁴⁾을 고려할 때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방식은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통되면 돌이키기 어려우며,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므로, 위장수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찰이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3)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2020. 2. 4. 개정, 2021. 1. 1. 시행

다만, 신분위장수사는 수사기관이 실제의 역할을 숨긴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만적 방법으로 수사 대상자로부터 범죄에 관한 증거나 자료를 수집함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통제의 측면에서 검사를 경유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현행법 제25조의4에서 일반적인 신분위장수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생략한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종합하면,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경찰이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신청할지 여부는 수사의 효율성, 신속한 피해자 보호 필요성, 신분위장수사의 통제 필요성, 현행 규정의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개정안은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만 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도록 할 경우 긴급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절차를 규정한 현행 제25조의4제2항⁵⁾도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분위장수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신분위장수사 통제 완화인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 등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